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04
----------	------

2021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혜련 의원 (찬성의원 9명)

나. 발 의 일 : 2021년 5월 28일

다. 회 부 일 : 2021년 6월 1일

라. 상 정 일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21일 상정·심사보류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9월 8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혜련 의원)

### 가. 제안이유

-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 또한 2015년 ‘병역명문가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음.

- 이에 예우대상자 이외에도 예우대상자 가족, 타 지역의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2020년 말 기준, 전국 병역명문가 6,395가문)해,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또한, 조례의 근거 규정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1)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1호, 제3호).
- 2)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을 예우대상자 가족과 타 시·도의 병역명문가 까지 확대하고, 시설물 감면료에 주차료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후단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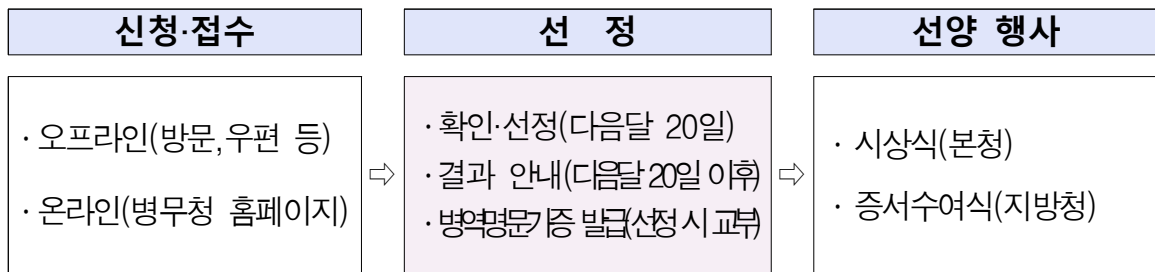
다. 입법예고(2021. 6. 4. ~ 6. 11.)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이외에도 그 가족과 타 지역의 병역명문가까지 확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82조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발·관리하고 있으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 < 선정 절차(병무청) >



※ 병역명문가 선정(21. 2월 기준) : 서울시 1,198가문(전국 6,395가문)

-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한 예우 및 우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17개 전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는 226개 중 174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

### 「병역법」

-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병무청 훈령)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82조에 따라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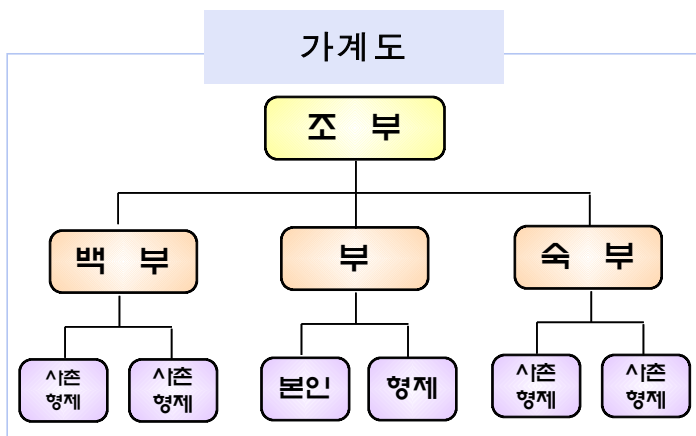
제20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병역명문가 개요>

○ 병역명문가 :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 3대 가족

·1대부터 3대(조부와 부·백부·숙부 및 본인·형제·사촌형제)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 현역복무

\*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군복무자 1명 이상 포함

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1호, 제3호, 안 제4조)

- 안 제2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 ‘3대’의 범위에 대하여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으로 하고,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병무청 규정명(「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일치시키며(안 제2조제1호),
- ‘예우대상자의 가족’ 범위 중 ‘모’를 ‘부모’로 하는(안 제2조제3호) 등, 현행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맞추어 반영하고,
- 안 제4조는 ‘범위 안’을 ‘범위’로 개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 용화로 개정하려는 것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9판, 190쪽)>

번호	경어 대상 용어	한자·영어	순화 용어
1551	범위 내에서 범위 안에서 범위 이내로		범위에서 (○)번의 범위에서

본 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	1.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를 ----- 「병역명문

<p><u>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u>」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p> <p>2. (생략)</p> <p>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u>모</u>,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p> <p>제4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u>」-----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u>부모</u>-----.</p> <p>제4조(예우 및 홍보) ① ----- <u>범위</u>----- ----- -----.</p> <p>② (현행과 같음)</p>
---	---

- 다만, 안 제2조의 ‘병역명문가’ 정의 규정의 개정 사항은 본 조례에서 정의 등을 인용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개정(2019.3.11., 개정 및 2020.9.10.)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인용 규정이 개정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방치하였는바,
  -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조례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소관 조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 안 제2조제1호의 경우 인용 규정 조문의 잦은 개정 등에 따른 본 조례의 대응성 및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사항을 직접 명시하는 것 보다는, 인용 규정의 조항을 인용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개정안 관련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개정 연혁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2017. 11. 7., 일부개정·시행)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2019. 3. 11., 일부개정·시행)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2020. 9. 10., 일부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제2조(정의) ----- -----.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1.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 -----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3. ----- ----- <u>부모</u> ----- -----.

- 한편, 본 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는 종전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2019. 3. 11., 일부개정·시행) 의 병역명문가 정의를 인용하고 있는 반면,
- 현행 규정(2020. 9. 10., 일부개정·시행)은 병역명문가 선정 요건에 4대째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까지 포함하여 기존 3대까지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여 규정하였는바,
- 현행 보완 규정된 사항까지 반영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나.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범위 및 혜택 사항 확대(안 제5조제1항)**

- 안 제5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사항을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으로까지 확대하고,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현행 사용료·입장료·수강료의 감면에 더하여 주차료 등까지 확대하여 감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본 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우대) ① 시장은 <u>예우대상자에 대하여</u>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u>사용료·입장료·수강료</u>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u>&lt;후단 신설&gt;</u>	제5조(우대) ① ---- <u>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u> ----- ----- ----- <u>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료</u>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u>이 경우 감면 대상은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 병역명문가문(대표자 주소지 기준) 현황 >** (단위: 가문)

구 분	계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가문 수	<b>918</b>	51	46	18	62	35	30	36

구 분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가문 수	16	52	29	28	44	30	31	53	31

구 분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	중랑
가문 수	31	81	44	55	28	38	16	16	17

※ 현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하는 병역명문가 대상은 1,198가문 5,989명



- 다만,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0조)에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차료’까지 감면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병무청 훈령)

- 제20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서울시(자치구 포함) 병역명문가 예우 혜택> (2021. 5. 31. 기준)

시 (6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차요금 20% 할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무료관람(관람료 면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무료관람(관람료 면제)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무료관람(관람료 면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수강료 감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병역명문가 단체 경기 및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			
자 치 구 (54개)						
공영주차장 주 차 료	보건소 진료비	문화재 관람료, 체험시설	평생학습 센터교육비	복지센터 사용료	도서관	체육시설 사용료
15개	11개	3개	7개	2개	2개	14개
강북,강서,구로,동대문, 마포,서대문,송파,양천,종로, 성북,노원,관악,중랑,서초,중구	강북,동대문,동작, 서대문,송파,종로, 노원,관악,중랑,서초, 중구	동대문,서대문, 노원	강서,동작, 서대문,양천, 관악, 중랑, 서초	동대문, 관악	마포,성북	강북,강서,구로,동대문, 노원,동작,마포,양천, 종로,성북,관악,중랑, 서초, 중구

- ※ 병역명문가 예우는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감면 규모 등에 대한 통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본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 병역명문가에도 서울시 시설 등에 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지원의 여지와,
  - ※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17개 전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는 226개 중 174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
-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1년)」에서는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으로 자치단체는 당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 관련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본 개정조례(안)에 근거하여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까지 확대하여 서울시 우대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 병역명문가에게도 서울시 시설 입장료 등의 감면을 확대하는 안 제5조제1항 후단의 신설은 타 시·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중복 수혜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함.

**나. 주요내용**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사항 확대안을 삭제하여 수정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삭제).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504
----------	-------------

제안연월일 : 2021년 9월 6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가. 수정이유

-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 병역명문가에게도 서울시 시설 입장료 등의 감면을 확대하는 안 제5조제1항 후단의 신설은 타 시·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중복 수혜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함.

## 나. 주요내용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사항 확대안을 삭제하여 수정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삭제).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우대) ① 시장은 <u>예우대</u> <u>상자에 대하여</u> 시에서 설치 ·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설물의 <u>사용료·</u> <u>입장료·수강료</u>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u>&lt;후단 신설&gt;</u></p> <p>② (생략)</p>	<p>제5조(우대) ① ----- <u>예우대상</u> <u>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u> ----- ----- ----- <u>사용료·입</u> <u>장료·수강료·주차료</u>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u>이 경우</u> <u>감면 대상은 다른 시·도에</u> <u>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u> <u>당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우대) ① ----- <u>예우대</u> <u>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u> <u>게</u> ----- ----- ----- <u>사용료·</u> <u>입장료·수강료·주차료</u> 등 을 감면해 줄 수 있다. <u>&lt;삭</u> <u>제&gt;</u></p> <p>② (개정안과 같음)</p>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을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모”를 “부모”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우대상자에 대하여”를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로, “사용료·입장료·수강료”를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p> <p>2. (생 략)</p> <p>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 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부모----- -----.</p>
<p>제4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4조(예우 및 홍보) ① ----- ---- 범위-----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u>사용료·입장료·수강료</u>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5조(우대) ① -----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 ----- ----- ---- <u>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료</u>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